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보고

제107회기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김상현
서 기 고광석

1. 조 직

- 위 원 장: 김상현
- 부위원장: 지동빈
- 서 기: 고광석
- 회 계: 원태운
- 총 무: 박태천

2. 회 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2. 10. 25.(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운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② 충남노회 폐지 후속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충남노회 소속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가) 충남노회 소속 각 교회는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해서 이명(가입)할 노회를 결정한다
(결정한 교회는 공동의회록을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한 후, 가입한다).

나) 12월 31일까지 노회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와牧사는 소속이 없어짐으로 이후 일체의 행정 행위를 중지한다.

다) 각 교회가 가입할 수 있는 노회는 대전지역 5개 노회와 충청노회로 제한한다.

라) 12월 31일까지 충남노회의 행정행위는 총회(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마) 충남노회 소속 당회 중 21당회 이상이 12월 31일까지 노회 신설을 청원할시, 본 위원회 검토 후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신설할 수 있다(충남노회 명칭은 사용 불가).

③ 노회 수습 절차는 서기 보고를 받되 위원회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2. 11. 18.(금) 10:30

☞ 장 소: 온라인회의

☞ 결의사항

① 대전중부노회 삼광노회 박노섭 목사 관련 질의 건은 삼광교회를 이적, 박노섭 목사를 이명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② 삼은대길교회 홍석균 목사를 해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 ③ 동부교회 유장옥 목사의 중서울노회로 이명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④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 수습을 위해 11월 21일(월) 저녁 7시 30분 천안중부교회를 방문키로 하고, 당회장 및 당회원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2. 11. 30.(수)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충남노회 소속 임시목사, 무임목사, 부목사의 이명 청원의 건은 본인 신분 확인 후 원하는 노회로 이명을 허락하기로 하다.
- ② 충남노회 소속 교회와 담임목사의 대전지역 5개 노회 및 충청노회로의 이명, 이적의 건과 소속 교회의 분쟁 및 제반 사항을 노회적 차원에서 수습처리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요청하기로 하다.
- ③ 천안중부교회 수습을 위해 오전 10시 50분 목사 측 당회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다(출석자: 장진수 장로, 정원모 장로, 박경원 장로).
- ④ 오후 1시 목사 반대 측 당회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다(출석자: 정광호 장로, 정인창 장로, 정흥기 장로, 류재일 장로).
- ⑤ 천안중부교회 주일 오전과 오후(저녁)예배 및 수요일예배의 인도자 및 사례비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여타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기로 하다.
- ⑥ 차기 회의는 12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2. 12. 8.(목)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본 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에 청원한 내용에 관하여 제11차 총회임원회의 결의사항을 회신받아 확인하다.
- ② 주진만 목사를 전문위원(간사)으로 선임하기로 하다.
- ③ 천안중부교회 분쟁 조정안이 양측간 의견 차이가 있기에 위원장이 재조정하기로 하다.
- ④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 등 행정 처리를 위해 해 교회가 대리 당회장을 요청할 시 본 위원회 위원장을 대리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2. 12. 27.(화) 21:00

☞ 장 소: 온라인회의

☞ 결의사항

- ① 파도교회 담임목사 김중남 목사의 원로목사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② 파도교회 대리당회장 임민순 목사를 1월 1일 이후 김중남 목사 은퇴 후 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하기로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충남노회의 행정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기에 임민순 목사를 인정할 수 없고 본 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를 파도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로 파송하기로 하다.

- ③ 충남노회 폐지 후속 처리를 위한 노회적 행정업무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2023. 1. 16.(월) 15: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신설노회 가입 청원의 건은 서류를 보완하여 차기 회의 때 다루기로 하다.
- ②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파도교회와 천안중부교회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 ③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당회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되 위원장 김상현 목사를 파송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2023. 2. 3.(금)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7회 총회결의대로 천안중부교회 정관 중 총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개정하도록 천안중부교회 당회에 지시하기로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2023. 3. 2.(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윤해근 씨 외 21인(조직교회)이 제출한 신설노회 청원의 건은 서류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 ② 예산우리교회(황용현), 성성우리교회(김환태), 산울교회(소대영), 석당교회(박준연), 가덕목양교회(임성재), 아산사랑의교회(윤익세), 양대교회(정제충)의 청원서는 접수하되, 21당회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신설노회 설립을 불허하기로 하다.
- ③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11차 임원회)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 ④ 위 2항과 3항의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본부, 총회임원회, 본 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총회 제98회, 제104회 결의에 의거 즉시 시별 지시하기로 하다.
- 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00만 원을 재정부에 추경 요청하기로 하다.

9) 제9차 회의

☞ 일 시: 2023. 3. 16.(목) 13:00

☞ 장 소: 온라인회의

☞ 결의사항

- ① 충남노회 고영국 목사가 청원한



가. 충남노회 직인 등록

나. 충남노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다. 충남노회 노회장, 서기 전산 등록의 건은

제8차 회의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로 하여금 노회를 회집하도록 결의하여 시행한바 기획행정국에 지시하여 직인 및 전산 등록,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시행하도록 하다.

- ②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 김상현 목사를 이상규 목사로 변경 요청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

☞ 일 시: 2023. 5. 26.(금)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회 결의사항 통지의 건은 위원장 김상현 목사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다.
②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추경 200만 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11) 제11차 회의

☞ 일 시: 2023. 8. 3.(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총회임원회 지시대로 그동안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고하다.
② 충남노회 윤해근 목사가 신설노회 관하여 위원장에게 카톡으로 자료를 보냈다는 위원장의 보고를 들었으나 본 위원회에 정식 문서로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다.
③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현 충남노회 상황과 권순웅 총회장의 문자로 지시한 상황을 설명하여 기존에 적용했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15조를 적용하고 정기회측(고영국 노회장)이 적절한 노회임을 결의하고 통지하기로 하다.
④ 본 위원회 제108회 총회보고서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작성하기로 하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최종 보고

아래와 같이 본 소위원회의 후속처리 및 결의사항을 보고합니다.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이 분쟁하던 중, 2020년 9월 24일자 3건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정기회 측이 승소하였다(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결의가 무효 됨). 그래서 총회가 결의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정기회 측이 적법한 노회가 되었으나 당시에 시행세칙대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현재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후속 처리 및 결의하게 되었다.

1. 제107회 총회결의가 양립됨을 확인하였다.
 - ① 충남노회를 “폐지”하고, 21당회 이상이 신설노회를 원할 시 허락하기로 결의함
 - ②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폐지하자는 현의안에 대해 “유지”키로 결의함
2. 총회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에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를 조직하고(제7차 임원회결의), 소위원회에 노회적 차원의 행정 일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제10차 임원회결의), 김상현 위원장에게 수습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면서 사회소송시행세칙 적용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1차 임원회결의).
3. 소위원회에서는 위 결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명이적을 원하는 목사와 교회에 대해 대전지역 5개 노회와 충청노회로 이명이적을 허락하기로 하고(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제10조), 소위원회가 노회적 행정처리를 대행하며(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제3조, 제11차 임원회결의), 신설노회 가입을 원하는 교회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전 노회원에게 공지하였다.
4. 그러나 위 기간 중 박OO목사(OO교회)만 신청하여 대전중부노회로 이명이적을 허락하였고, 기존에 공지한 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공지했으나, 2월 28일 윤OO 목사 외 21인이 신설노회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들의 이름과 소속 교회를 화이트로 지운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지 못하고 반려하였다.
5. 이에 소위원회는 신설노회 및 이명이적을 청원하는 교회가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충남노회 모 회원이 총회(장)를 상대로 “충남노회 폐지 결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총회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에 따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결의”보다 상위법임을 확인하고(총회 규칙 제8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정기회 측 고영국 목사를 소집자(대표자)로 하여 노회를 정상화하도록 지시하고(제17차 임원회에 보고) 총회에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6. 그러나 제24차 총회임원회(2023년 5월 18일)에서 충남노회 소집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적용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중지하기로 하고, 다시 각 측의 입장을 듣고 재협상을 하도록 소위원회 및 위원장 김상현 목사에게 지시하였다.



7. 이에 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고영국, 윤해근, 윤익세 측 대표자들을 불러 다각도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상호 간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8. 이로 인해 충남노회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6월 11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문자 지시에 따라 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당사자들과의 재협상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2023년 8월 3일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에 의해 정기회 측이 적법한 노회임을 확인하고 고영국 목사에게 대표권(소집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결론적으로, 소위원회가 충남노회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제105회 총회에서 제정공포 된 “시행세칙”이다.
- ② 제107회 총회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폐지’ 현의가 상정되었으나 ‘유지’하기로 결의하여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다.
- ③ 총회규칙 제8조에 의하면,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3항의 “사업시행법(내규): 시행령-시행세칙-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시행세칙은 결의보다 우선 된다.
- ④ 따라서 제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가 폐지 결의되었더라도 ‘시행세칙’이 폐지되지 않는 한 ‘결의’보다 상위법이며 또한 총회임원회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위원회에 부여하였으므로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시행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총회규칙 제8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회의 규정 제78조, 제11차 총회임원회결의).